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20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박수영 · 서천호 · 곽규택
김상훈 · 임이자 · 김미애
김승수 · 김도읍 · 박충권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그 수익금액을 교육세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손실·상환손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 거래는 실시간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이 동시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세법은 매매손실 반영없이 매매이익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어서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도 교육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단일 거래로 매매손익이 없는 경우와 다수 거래로 매매이익 및 매매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통산할

경우 손익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거래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다수 거래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유가증권 처분방식에 따라 교육세 과세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아울러,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을 손익 통산한 순손익으로 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는 손익 통산한 순손익으로 하지 않고 매매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즉,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거래는 투자 전략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 회피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와 동일한 특수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 매매이익만을 과세표준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매각익·상환익”을 “매각·상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으로, “말한다)”를 “말한다)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② (생 략)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 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 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 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u>매각익</u> <u>·상환익</u>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 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 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 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 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 매각· <u>상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u> --- ----- ----- ----- <u>말한다)을 통산한 순손익</u>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